

소 장

원 고 ○ ○ ○
○○ ○○○ ○○○ ○○○○ ○○○, ○○○○ ○○○○(○○○○○○○○)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연구자 및 활동가로서 2007. 6. 18. 제17대 국회 제268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한·미 FTA¹⁾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진술인으로 참

석하였고, 2010. 11. 21.~24. 제18대 국회 제303회 제11, 12, 1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이른바 ‘한·미 FTA 끝장 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석하였으며, 2011. 9. 27.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한 바 있으며, 2014. 4. 48. 제19대 국회 제324회 제4차 통상관계특별대책위원회의 ‘TPP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2015. 2. 11. 제19대 국회 제33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전문가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자유무역협정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해 오면서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이란 주제로 단행본 서적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외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행정청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과 피고의 처분

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모두 5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2012. 3. 15. 조약번호 제2081호.

- 제1 정보: 한·미 FTA 협정 발효 전까지 지재권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
- 제2 정보: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지재권 분야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
- 제3 정보: 한·미 FTA 협정 지재권 분야와 관련하여, (1) 산업통상자원부(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전의 외교통상부 포함)에서 다른 부처, 부서, 기관에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취지로 발송한 문서의 목록, (2) 타 부처,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한 협상 대응 방안이나 의견을 접수한 문서의 목록, (3) 협상 전후와 협상 대응을 위해 또는 협상 결과를 정리 요약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목록, (4) 앞의 (1)~(3) 목록의 해당 문서.
- 제4 정보: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재권 분야와 관련하여, (1) 미국측과 회합한 내역에 관한 정보 목록, (2) 회합에서 주고받은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
- 제5 정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의원이나 대사, 산업계, 협회, 개별 기업으로부터 받은 (1) 문서의 목록, (2) 해당 문서, (3) 산업통상자원부가 답변을 보낸 것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목록, (4) 해당 문서
- 제6 정보: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나 위원회 및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1)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 문서.

나. 피고의 처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고는 2016. 5. 25. “정보공개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추후 직접 송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주통상

과 유의택 사무관은 2016. 5. 31. “정보공개청구 중간답변”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첨부 자료(“정보공개 통보자료.hwp)와 함께 원고에게 보냈고(갑 제1호증의 2, 3), 최종 답변은 2016. 7. 5.자 이메일(“정보공개 처리_송부분“)과 첨부자료(“정보공개 송부분.hwp“)로 보내왔습니다(갑 제1호증의 4, 5).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1 정보에 대한 처분(공개): 미국측이 보내온 자료 17건과 우리측이 보낸 자료 14건의 목록.
- 제2 정보에 대한 처분(공개): 미국측이 보낸 자료 3건의 목록, 한국측이 보낸 자료 2건의 목록.
- 제3 정보에 대한 처분(부존재): “해당 문서를 우리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 처리”
- 제4 정보에 대한 처분(부존재): “정보부존재/검색된 정보없음”
- 제5 정보에 대한 처분(부분공개): 목록은 검색된 것(13건)만 공개, 문서 자체는 “아측 및 미측의 의견이 포함된 문서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움”
- 제6 정보에 대한 처분(비공개): “국회 요청에 의해 작성되어 국회로 이송된 문서로, 국회를 통해 해당 문건 공개를 요청”

이를 표로 정리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비공개 및 부분 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피고의 처분	비공개 사유
제1 정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서의 목록)	일부만 공개	사유 없음
제2 정보 (한미 FTA 발효 후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	일부만 공개	사유 없음

제3 정보 (한미 FTA 지재권 관련)	(1) 타부처에 발송한 문서의 목록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타부처로부터 받은 문서의 목록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3) 협상 대응/결과 정리 요약 문서 목록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4) 앞의 (1)~(3) 해당 문서	부존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제4 정보 (미국측과의 회합)	(1) 회합 내역 정보 목록	부존재	검색된 문서 없음
	(2) 회합에서 주고받은 문서	부존재	검색된 문서 없음
제5 정보 (미국 의회, 산업계 등 문서)	(1) 미국 의회, 산업계 등으로부터 받은 문서 목록	일부만 공개	검색된 목록만 공개
	(2) 해당 문서	비공개	외교관계 등
	(3) 산통부 답변 목록	비공개	이유 없음
	(4) 해당 문서	비공개	외교관계 등
제6 정보 (국회 제공 문서)	(1) 문서 목록	비공개	국회에 요청할 것
	(2) 해당 문서	비공개	국회에 요청할 것

3. 피고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제1 정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제1 정보는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지재권 협상 과정에서 양 측이 주고받은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극히 일부 목록 정보만 공개하면서 마치 전부를 다 공개하는 것처럼 처분하였습니다.

(2) 한미 FTA는 2016. 3. 사전 협상(2회), 정식협상(8회), 의약품 별도 협상(3회), 고위급회담, 법률검토회의, 추가협의를(2007년), 추가협상(2010년), 이행점검협의(2011년, 4회) 등을 거쳐 2012. 3. 15. 발효되었습니다. 피고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과정

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는 아래와 같다는 것입니다.²⁾ 누가 보더라도 극히 일부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협상 일정	미국측 문서	우리측 문서
2006. 3. 6. (제1차 사전협 의, 서울)	없음	없음
2006. 4. 17. (제2차 사전협 의, 워싱턴)	없음	없음
2006. 6. 5~9. (제1차 공식 협상, 워싱턴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 Proposed IPR Chapter (2006. 5. 26.) • 관련 법령 자료(18 USC 2511, 18 USCS 2520, 18 USCS 2512, 47 USC 325, 47 USC 553, 47 USCS 605) 	없음
2006. 7. 10~14. (제2차 공식협상, 서울(신라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view of Customs Bond (2006. 7. 4.) • Computer Software Piracy FR notice (2006. 7. 6.) • Copyright Term Ext & Temp Copies (2006. 6. 29.) • Inequitable Conduct (2006. 6. 30.) • Sound and Scent Mark Info (2006. 7. 4.) (소리 및 냄새 상표 제도) • Statutory Damages Paper (2006. 6. 27.) (법정손해배상 제도) • U.S. File Sharing Policy (2006.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emporary Damages (2006. 6. 13.) • Acceptable Forms of Security (2006. 6. 29.) • Additional Material on Patents (2006. 6. 29.) • Additional Material on Trademarks (2006. 6. 30.) • Geographical Indications Application Requirements (2006. 6. 29.)
2006. 8. 21~22. (의약품)	없음	없음

2) 협상 일정과 양측 문서는 문서 작성일 직후에 열린 협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측 문서 중 “관련 법령 자료”는 작성일자가 없으나, 1차 공식 협상을 위해 제시한 것이 분명해 보여, 제1차 공식 협상 문서로 분류하였습니다.

작업반 1차 별도 협상, 싱가포르)		
2006. 9.6~9. (제3차 공식 협상, 시애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Tranist (2006. 7. 27.) (환적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제도) • Confusingly similar border enforcement laws and regs (2006. 8. 30.) • RMI Scope USG_Final (2006. 8. 29.) • USCBP IPR Enforcement in Foreign Trade Zones (2006.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lusive License (2006. 8. 30.) (전용실시권 제도) • Administrative Proceedings (2006. 8. 30.) (행정 구제 절차) • OSP TPM (2006. 8.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기술적보호조치)
2006. 10. 17. (의약품 작업반 2차 별도 협상, 화상회의)	없음	없음
2006. 10. 23~27. (제4차 공식협상, 제주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ct (2006. 10. 16.) (관세법) • Formal Complaint (2006. 10. 16.) • Free Trade Zone (2006. 10. 16.)
2006. 11. 12~13. (의약품 작업반 3차 별도 협상, 서울 하얏트 호텔)	없음	없음
2006. 12. 4~8. (제5차 공식협상, 몬타나)	없음	없음
2007. 1. 15~19. (제6차 공식협상, 서울(신라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1 Rulemaking (2007. 1. 10.) (17 USC 1201(a))의 예외 사항들) • Cases Referenced by CBP (2007. 1. 10.)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2007. 1. 10.) 	없음

	• Traceable Assets Explanation (2007. 1. 10.)	
2007. 2. 11.~14. (제7차 공식협상, 워싱턴 DC)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ement (2007. 1. 26.) • Civil Procedure Act (2007. 1. 29.) • Geographical Indications (2007. 1. 30.)
2007. 3. 8.~12. (제8차 공식협상, 서울)	없음	없음
2007. 3. 19.~22. (고위급 회담 워싱턴)	없음	없음
2007. 5. 29.~6. 6. (법률검토회의 워싱턴)	없음	없음
2007. 6. 21.~22. (추가협약의 (1차 재협상), 워싱턴)	없음	없음
2010. 10. 26. (한미 통상장관회의(2차 재협상), 샌프란시스코)	없음	없음
2010. 9. 23. (위 장관간 협의를 위한 1차 비공식 접촉, 샌다이)	없음	없음
2010. 10. 7. (위 장관간 협의를 위한 2차 비공식 접촉, 파리)	없음	없음
2010. 11. 4.~7. (2차 재협상을 위한 실무급 협의, 서울)	없음	없음
2010. 11. 30.~12. 3. (2차 재협상을 위한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매릴랜드주 콜롬비아시)	없음	없음
2011. 12. 5.~6. (이행준비상황점검협의, 워싱턴)	없음	없음
2011. 12. 19.~20. (이행준비상황점검협의, 워싱턴)	없음	없음
2012. 1. 27.~1. 28. (이행점검)	없음	없음

검협의, LA)		
2012. 2. 19.~20. (이행준비 상화점검협의, 시애틀)	없음	없음

(3) 별지로 정리한 것처럼, 한미 FTA 지재권 협상은 제1차 협상부터 여러 쟁점들이 있었고, 고위급 회담에 가서야 타결을 볼 정도로 양측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재협의, 추가 협의에서도 지재권 문제(허가-특허 연계)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압도하기 위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실증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문서나 자료가 양측에서 교환되지 않고 오로지 협상장에서 구두로만 논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또한 FTA 협상은 맨 처음 협상장에서 양측이 준비한 협상문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양측 입장을 모두 담은 하나의 통합협상문을 놓고 협상을 벌여갑니다. 그래서 공식협상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통합협상문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공개한 목록 정보에는 제1차 공식협상을 위해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문안(US Proposed IPR Chapter (2006. 5. 26.))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측은 제1차 공식협상에서 협상문안을 미국측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별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항과도 다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한미 FTA 지재권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나 기타 자료의 목록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목록 그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후 해당 목록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나. 이 사건 제2 정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제2 정보는 한미 FTA 협정 발효(2012. 3. 15.) 이후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 받은 문서의 목록입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 3건의 목록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3 “3번 항목”).

- Personal Use Policies and File Sharing Technologies (2011. 12. 9.)
- Implementation Laws and Regs Table (2011. 12. 9.)
- TPM RMI non musical performance (2012. 2. 7.)

(3) 피고가 공개한 3건의 목록 정보는 모두 한미 FTA 협정 발효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아닙니다. 작성일자와 협상 경과를 대비해 보면 피고가 공개한 3건의 목록 정보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양측이 이행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이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 이 사건 제3 정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 (1) 이 사건 제3 정보는 피고(2013년 정보조직법 개정 전 외교통상부 포함)가 다른 부처 등과 협상을 위해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과 해당 문서입니다.
- (2)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송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3) 피고가 이 사건 제3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2013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통상 관련 업무는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모두 승계되었습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외교부는 해당 정보는 더 이상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³⁾ 실제로 원고가 한미 FTA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하면 예외없이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 처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전의 외교통상부가 관리하는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886호) 제31조에 따르면,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의 주된 업무는 외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이고(제3항 제1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3항 제6호)을 관장할 뿐입니다(양자경제외교과는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전의 외교통상부에는 없던 조직을 법 개정에서 새로 만든 것으로,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당시에는 명칭이 ‘지역경제외교국’이었다가 2013. 9. 26. 개정 때 ‘양자경제외교국’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 모두 승계한 정보에 대해 부존재 처리를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사건 제4 정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 (1) 이 사건 제4 정보는 한미 FTA 발효 후 지재권 분야와 관련하여 양측이 회합한 내역에 관한 정보 목록과 회합에서 주고받은 문서 및 기타 자료의 목록입니다.
- (2) 이에 대해 피고는 부존재 처리를 하면서 사유를 “검색된 문서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 (3) “검색된 문서 없음”이라는 사유가 비공개 처분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민간인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원고가 피고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담당자는 자기가 보고 있는 시스템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해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피고가 정한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⁴⁾ 또한 대외 통상업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제25조 제2항 및 제5항). 2014. 2. 24.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르면, 피고는 단위 과제별로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2개의 단위 과제 “한-미 FTA 추진”,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및 이행”을 정해두었습니다(갑

무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위한 핵심 업무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록은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검색어 몇 개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 (4) 한미 FTA 발효 후 한미 양측이 회합하면서 지재권을 논의한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 11. 18.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 제22.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 FTA 고위급 협의’⁵⁾가 2012. 5. 16. 제1차 회의에 이어 2013. 11. 17. 제2차 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중 장관급 공동위, 상품, 무역구제,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자동차, 의약품 등 총 13개 이행기구회의 개최”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 과정에서 지재권에 관한 사항이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미 FTA 제18.8조 제11항은 “양 당사국은 검색(주: 특허 검색을 말함) 및 심사업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진전의 기초로서 양국의 특허 기관간 협력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양국 특허청은 2015. 5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시범시험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제18.10조 제25항은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

제2호증). 그리고 한미 FTA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정했습니다.

5) 고위급협의를 공동위원회 절차 규칙 제4조에 따른 고위급 협의체의 회의를 말합니다.

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의 관세당국은 여러 차례 회합을 하였는데, 이 조항과 관련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 이 사건 제5 정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 (1) 이 사건 제5 정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의원이나 대사, 산업계, 협회, 개별 기업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목록, 해당 문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답변을 보낸 문서의 목록과 해당 정보입니다.
- (2) 피고는 이 사건 제5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해 목록 13개만 공개하고, 문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는 “아측 및 미측의 의견이 포함된 문서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 (3) 목록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개한 것은 모두 주미한국대사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배포” 대상은 피고를 비롯한 관계 부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의원이나 미국대사, 산업계, 협회, 개별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답변을 보낸 것이 있다면 답변 문서의 목록입니다. 원고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런 문서는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도중에 미국 의회, 산업계 등에서 여러 의견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고, 최근에는 주한미국대사가 2015. 3. 한국 정부(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한을 보내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김용익 의원대표발의안)이 한미 FTA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⁶⁾ 그리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제약산업계도 우리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가 공개한 목록 정보에는 이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 (4) 문서 그 자체의 공개 여부에 피고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움”이란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4730 판결).

6) 원고는 당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전문가로 초청되어 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 이 사건 제6 정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 (1) 이 사건 제6 정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공한 문서의 목록과 해당 문서입니다.
- (2) 이에 대해 피고는 비공개 처분하면서 “국회 요청에 의해 작성되어 국회로 이송된 문서로, 국회를 통해 해당 문건 공개를 요청”을 사유로 달았습니다. 이 역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포함하며(제2조 제1호),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였다거나 다른 기관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3) 피고가 한미 FTA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공한 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비추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FTA 제22.2조에 따르면,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의 감독 권한 뿐만 아니라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고(동조 제3항 라호),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다호). 또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⁷⁾에서 투자자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조치가 유보(부속

7) 최근 ISDS 사례를 보면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지적재산권이 주요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서 I, II의 현재유보 또는 미래유보) 항목 범위 내에 있다고 국가가 항변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공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고, 이 요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해석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협정 제11.23조). 이처럼 한미 FTA에 대한 독보적인 해석 권한을 갖는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 역할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기관에 한미 FTA 협정의 해석·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해석론을 제시했는지는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한미 FTA는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강행규범이고, 지적재산권 조항은 거의 전부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입니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면서 마치 전부 공개하는 것처럼 처분하였고,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댔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여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보장되어 있는 알 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의1: 처분서((2016 7. 4.)
1. 갑 제1호증의2: 피고의 담당 사무관 이메일(2016. 5. 31.)

- 1. 갑 제1호증의 3: 정보공개청구 중간답변(2016. 5. 31.)
- 1. 갑 제1호증의 4: 피고의 담당 사무관 이메일(2016. 7. 5.)
- 1. 갑 제1호증의 5: 정보공개 송부분
- 1. 갑 제2호증: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관리기준표
- 1. 갑 제3호증: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6. 10. .

원고 ○ ○ ○

서울행정법원

귀중